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시행 2020. 3. 2.] [국가보훈처훈령 제1306호, 2020. 3. 2.,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련 법령(행정규칙 포함)에 따라 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 중 1가지 이상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보철용 차량"이란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 1대를 말한다.
3. "보철용 LPG차량"이란 보철용 차량 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말하며,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및 자동차표지 발급 적용을 받는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말한다.
4. "복지카드"란 상이자가 보철용 LPG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구입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01년 7월 1일 이후 세금인상분 및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버스·지하철 무임교통(이하 "무임교통"이라 한다)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카드를 말한다.
5. "자동차표지"란 상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제공, 요일제 적용 제외 등 별표2의 보철용차량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지를 말한다.
6. "보훈(지)청장"이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보철용 LPG차량의 LPG 구입대금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

2. 「유료도로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지원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자동차표지 지원

제2장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제4조(세금인상분 지원대상 및 범위) ①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상이자가 사용하는 보철용 LPG차량으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의 상이자는 장애등급판정자에 한한다.

② 지원범위는 상이자가 보철용 LPG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구입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01년 7월 1일 이후 인상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차량 1대당 최대 300리터로 하되 연간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출·퇴근, 취학 및 생업활동에 필요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50리터까지 추가승인 할 수 있다.

1. 하루 운행거리가 80km이상 운행할 경우
2. 하루 운행거리가 80km미만 운행자 중 예외적으로 추가승인할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추가승인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및 추가승인 서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는 세금인상분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⑥ 보훈(지)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후에는 1년마다 1회 이상 추가승인 자격유지 여부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복지카드로 충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카드종류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LPG 충전소에 세금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세금인상 전 LPG 대금(본인부담금)은 사용자에게, 세금인상분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한다.
2. 직불(체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세금인상분을 제외한 LPG 대금을 연결계좌에서 이체 받은 후, LPG 대금 전액을 LPG 충전소에 지급하고, 세금인상분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사용자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상이자에게 지급한 세금인상분 환수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2.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3. 상이자가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4. 상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유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5.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
 6. 출·퇴근, 취학 및 생계유지로 추가승인 사유 소멸 후 300리터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7. 그 밖에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 사용한 경우
- ③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2항에 따라 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확인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LPG 할인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1회 적발 시(사용횟수에 따라)
 - 가. 1~3회 사용 : 3개월
 - 나. 4~5회 사용 : 6개월
 - 다. 6회 이상 사용 : 1년
 2. 2회 적발 시 : 2년
 3. 3회 적발 시 : 3년
 4. 4회 이상 적발 시 : 5년
- ④ LPG 할인기능 정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 미납 시에는 납부 완료 시까지 LPG 할인기능을 정지한다. 다만, 1회 적발된 부당사용자가 부당이득금을 완납한 때에는 완납한 날의 그 다음날부터 LPG 할인기능 정지를 해제한다. 다만, 신한카드사 전산반영일이 영업일 기준 3일 소요되어 반영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급적용하여 지급한다.
- ⑤ 보훈(지)청장은 e-통합보훈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자격변동 여부를 수시(매일) 확인하여 부당사용자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복지카드 부당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수 처리하여야 한다.

1. 보훈(지)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아 반환 의무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보훈(지)청장은 지난 연도분 LPG 세금인상분 부당이득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에게 세입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3. 보훈(지)청장은 당해 연도분 LPG 세금인상분 부당이득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고금 반납고지서(여입금)를 발부 요청하여야 한다.
 4. 보훈(지)청장은 반환 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5. 보훈(지)청장은 반환 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 ② 서면에 따른 납입 등의 고지는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반환 의무자) 복지카드가 부당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상이자, 부정 수급자 또는 부당 이득자를 반환 의무자로 한다.

제9조(환수 처리기관) LPG 세금인상분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업무는 부당이득금을 확정된 보훈(지)청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하기 전에 타 보훈(지)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3장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제10조(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은「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애국지사 또는 당해 애국지사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당해 애국지사가 승차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가.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상이자 또는 당해 상이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당해 상이자가 승차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다.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② 통행료의 감면율은「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행료의 100분의 100(면제)
 - 가. 제1항제1호의 차량
 - 나.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1급부터 5급까지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 가.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6급 이하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6급 이하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제10조의2(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발급)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분실 등으로 복지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의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1조(보칙) 통행료감면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등 유료도로통행료 감면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료도로법령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다.

제4장 복지카드 발급관리

제12조(카드종류 등) ① 복지카드는 국가보훈처장과 신한카드(주)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신한카드(주)에서 발급하고, 별표 1의 규격 및 도안의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두 종류로 한다.

② 보철용 LPG차량이 없는 수송시설이용지원대상자인 상이자가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무임교통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복지카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해당 지역에 한하여 신한카드(주)에서 무임교통 기능을 자동 부여한다.

제13조(카드기능) 카드기능에는 LPG 세금인상분,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및 무임교통 지원 기능이 있으며, 상이자 또는 차량 종류에 따라 기능은 달라질 수 있다.

제14조(신청 접수)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5*4.5cm) 1매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여 직불(체크)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상이자에게는 신한카드(주)에서 지정한 카드연결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야 한다. 단, 본인신청이 원칙이나, 대리 신청 및 우편접수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게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 LPG차량 소유여부, 세대분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시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부당사용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발급)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보훈(지)청장은 필요한 전산자료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치를 취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접수한 전산자료를 확인 한 후 신한카드(주)와의 협약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요청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복지카드 배송결과를 즉시 전산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④ 카드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6조(재발급) ① 상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재발급한다.

1. 복지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
2. 복지카드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복지카드 재발급에 따른 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신용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이자가 LPG 구입대금 등을 15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신한카드(주)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LPG 할인기능을 정지한다. 다만, 해당 상이자가 직불(체크)카드의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할 수 있다.

- 제17조**(카드의 반납·폐기 등) ① 보훈(지)청장은 주소불명(주민등록말소 포함) 등으로 상이자에게 복지카드를 1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를 교부받은 상이자가 자격상실(사망 등)하였거나 보철용 차량을 처분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등으로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 ④ LPG 세금인상분 지원액 정산 등 복지카드 발급에 따른 세부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훈령 이외에 신한카드(주)와의 협약에 따른다.

제5장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제18조(발급대상) 보훈(지)청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등을 표시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영업용 차량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중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영업하고 공영주차장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운행 억제 제외(요일제 등)를 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된 보철용 차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상이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다만, 마목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자로 구성된 단체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라.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및 (사)6·18자유상
이사회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으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 회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4.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차량 한 대
 -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5.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제19조(표지구분) 대상별 자동차표지 종류는 별표 3의「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다. 다만, 제18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신청 및 접수)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자동차표지를 신규로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신분증 사본 1부
2. 전문가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3.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이 제18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서류 1부
4. 제1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21조(발급) ① 보훈(지)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단결과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경합된 자 중 일반장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고 있는 자는 관련사실 확인 후 국가유공자 등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종전의 표지는 회수·폐기한다.

④ 제20조제2호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상이로 보행상 장애가 인정된 경우에 기존 진단서는 계속 유효하나 해당 상이가 아닌 다른 장애로 보행상 장애가 인정된 경우에는 자동차표지의 교체 수요가 있을 때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보행장애 소견이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발급)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단체 또는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 후 재발급한다.

1. 자동차표지를 분실·훼손한 경우
2. 보철용 차량을 변경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해당 상이가 아닌 다른 장애로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어 자동차표지의 교체 수요가 있는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한이 종료된 경우
5. 기타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2(회수 및 재발급의 제한 등) ①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표지관리 등) ① 보훈(지)청장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소유권변동과 차량등록 말소·차량번호의 변경 시에는 이를 즉시 반납토록 하여야 함
2. 주차장 감면 등 차량지원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운전석 앞면 유리 하단에 부착하여 외관상 식별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이자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에만 유효함
3.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당이용에 대하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4. 발급받은 자동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함

③ 보훈(지)청장은 상이자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지방보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보훈청장은 자체 현황과 소속 보훈지청 보고분을 수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칙)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등 자동차표지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5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306호, 2020. 3. 2.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